

2019 상반기

# KoDDISSUE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Policy Tre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정보 접근권 [한국]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장애인 '정보복지'에 대한 유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그리고 알 권리

장애인 정보접근. 우리는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다

[뉴질랜드, 미국]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려

[호주]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호주의 사례'

[EU] EU,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



### KoDDISSUE는?

- ㅇ 장애인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정책 제언들을 보다 신속한 형태로 분석ㆍ제시
- ㅇ 정책 현안 대응 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ㅇ 국내ㆍ외 통계, 성잭 사례, 이슈 등에 대한 객관석 현황 세공 및 상애인성잭 문야 동향과 현황 이슈 세공



2019 상반기

# **KoDDISSUE**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Policy Tre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정보 접근권 [한국]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장애인 '정보복지'에 대한 유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그리고 알 권리

장애인 정보접근, 우리는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다

[뉴질랜드, 미국]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려

[호주]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호주의 사례'

[EU] EU,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



# 장애인 정보 접근권

04	한국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I 신미영(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4	장애인 '정보복지'에 대한 유감 I 정기애(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18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그리고 알 권리 I 백정연(소소한 소통 대표)
24	장애인 정보접근, 우리는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다 I 김병수(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
33	뉴질랜드, 미국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려 I 신현기(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40	호주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정보 접근권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호주의 사례' I 김형식(한반도대학교대학원 명예교수)
46	EU EU,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 I 송재일(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격차해소팀 수석)





## I 장애인 정보 접근권-한국 I

#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의 정보접근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신미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들어가며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전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정보 (information)는 문자, 음(성), 디지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어떤 형태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이터, 사실(fact), 지식을 포함한다. ' 우리는 특정 정보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 '유익하다 또는 유익하지 않다', '사적이다 또는 공적이다', '이해하기 쉽다 또는 어렵다'라고 말한다. 정보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주관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다. 정보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지만 정보를 접하는 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익할 수도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도 있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 알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장애 학생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장애학생들이 이해할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의 내용과 구체적 권리는 〈표1〉과 같다.

<sup>1</sup>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110191#BK9



### 〈표1〉정보접근권의 법적 근거2

1. 근거조문	「헌법」 21조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		
2. 내용	자 유 권	정보접근 · 수집 · 처리	
	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법)	
3. 구체적 권리	정보수령권	접근가능한 일반적 정보원으로부터 수동적 수령	
	정보수집권	일반적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능동적 수집	
	정보공개청구권	비자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청구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과 키워드 입력을 통해 문자, 음(성), 디지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정보를 탐색하고 생성하기에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이고, 이 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18~34세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100%이고 2018년 99%로 1% 감소했으나, 50세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74%에서 2018년 91%로 증가하였다<sup>3</sup>.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의 대다수가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수교사로서 필자가 만난 지적장애학생들은 듣기와 읽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림1] 의사소통 티셔츠

있었다. 신미영(2012)의 '정신지체 아동의 문식성 교육 실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소재 J특수학교고등학교 3학년에서 한글을 통한 정보 읽기나 의사소통에 제한을 가진 학생들이 40% 정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문식성 실태를 인식하고 같은 학년 교사들과함께 '픽토그램(pictogram)', 즉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을 서울시 소재 J특수학교 중학생과 고등학

<sup>2</sup> 김유향, 『헌법강의안』, 2007.

<sup>3</sup>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02/05/smartphone-ownership-is-growing-rapidly-aroud-the-world-but-not-always-equally/



생에게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그래픽 심벌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 어 향상에 도움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의 의사소통 티셔츠는 2016년에 교 사들과 함께 고안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한 티셔츠이다.

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실태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장애학 생의 정보접근 실태 그리고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1개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둘째, 서울시 소재 여자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K 특수학교 컴퓨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3인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인원분포가 상이하여, 전체적인 실태와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설문 및 인터뷰는 2019년 6월 13일부터 14일까 지 2일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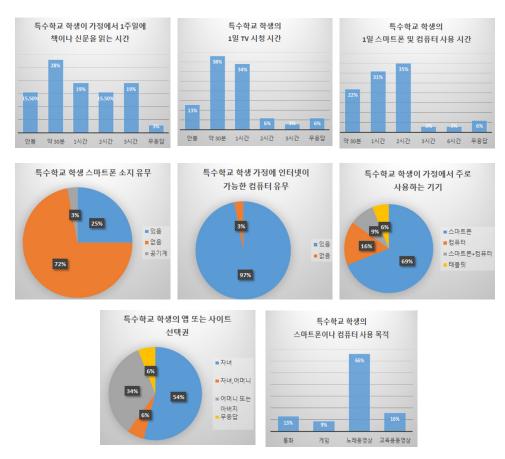
# 특수학교 학생 정보접근 실태조사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K특수학교에서 초등 5학년부 터 전공과까지 설문에 협조적인 학부모를 추천받아 담임교사들이 총 44부의 학부모 용 설문지를 가정에 보냈으며, 이 중 3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5%이나 무응답 항목 이 많은 1부는 제외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부모 32명의 자녀 학년은 초등 5~6 학년 4명,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7명, 전공과 5명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자녀의 듣기와 읽기 능력에 대해 묻는 설문 문 항은 학부모가 직접 응답하였으며, 쓰기와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는 대상 학생의 담 임교사가 보완하여 응답하였다. 학생의 듣기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이름을 변별하는 경우가 13%(4명), 단어수준을 변별하는 경우가 31%(9명), 단문 및 문장 수준을 변 별하는 경우가 56%(18명)로 나타났다. 읽기 능력은 사진 또는 그림을 구별할 수 있지만,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31%(10명), 이름 읽기는 12.5%(4명), 단어수준은 12.5%(4명), 문장수준은 44%(14명)로 나타났다. 말하기 능력에 대한 응답으로는 말하기 능력이 발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31%(10명), 따라 말하기와 일방적 단어 말 하기가 16%(5명), 단어수준으로 말하기가 12%(4명), 단문 및 문장수준이 41%(13



명)으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은 한글을 못 쓰는 경우가 37.5%(12명), 덧쓰기와 보고 쓰기가 12.5%(4명), 단어수준이 16%(5명), 단문 및 문장수준이 34%(11명)로 나타 났다. 정보접근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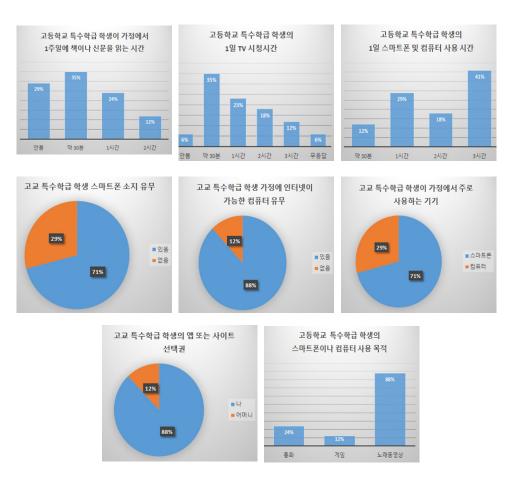
[그림2] 특수학교 학생 정보접근 설문조사 결과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정보 접근권을 위해 학교와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양한 수준(지적 능력)의 콘텐츠나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 수아동 개인 신상 및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그림을 이용한 정보 제공, AAC를 통한 의사소통, 터치식 스크린 제공,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보 습득능력 신장, 적절한 통제 및 사용시간 지도, 학교와 가정에서 애플리케이션 공유, 가정에서 교육용 동영상 사용을 도와줄 인력 지원 등이 있었다.



#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정보접근 실태 조사

서울시 소재 2개 여자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1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듣기, 읽기, 쓰기능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8%의 학생이 문장을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12%의 학생이 한글은 모르지만 사진이나 그림을 구별하며 덧쓰기와 보고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과 관련한 결과는 [그림3]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 문항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11명 중 7명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3명은 아이콘을 사용하여 검색하고, 1명은 키워드와 아이콘을 같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림3]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정보접근 설문조사 결과



# 특수학교 컴퓨터 수업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K특수학교 컴퓨터 수업 담당교사 A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컴퓨터 사용 방법을 익히는데 있어 마우스 조작 능력을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교육목적, 개선 사항을 〈표2〉에 제시하였다. 컴퓨터 수업 담당교사 3인과의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 〈표2〉 특수학교 컴퓨터 수업담당 K교사가 경험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비교 및 개선사항

컴퓨터의 단점		-마우스 조작능력을 습득하는데 오래 걸림 초등 6학년 상 수준: 6개월 정도 소요됨 초등 6학년 하 수준: 1년 정도 소요됨		
스마트폰의 장점		-조작이 쉬움 : 손으로 터치 포인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터치 모니터와 비슷함		
스마트폰 /	나용 목적	1. 여가/응용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지하철, 지도) 2. 학습적 측면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문자와 숫자를 통해 국어와 수학을 배우게 하고 싶음		
스마트폰 개선사항	구조화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미리 셋팅 -아이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방법 단순화 -인지 수준을 고려한 구조화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하 수준 학생들을 위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동요 동화 애플리케이션, 건전영상 셋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림 아이콘	-단순하게 최대한 직관적으로 문자 및 아이콘을 최소화 : 유니버셜 디자인은 노령층에 적용 가능함 -그림 또는 아이콘의 장점: 문자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친숙함 -개별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맞게 사진으로 설정함 -공통성: 사회적으로 공통된 아이콘을 사용함 -인지 수준을 고려한 공통된 아이콘을 개발함 -교사가 인터넷 아이콘을 셋팅함. -아이콘이 많으면 구조화가 필요함		



# 특수학교 학생의 정보 접근성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정보접근 실태조시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로 정보를 얻거나 표현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비율이 특수학 교 학생은 각각 50% 전후였으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문자로 정보를 얻 거나 표현하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 문자로 정보를 얻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둘째, 청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특수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말하기 능력은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발화가 되지 않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 이 전체 학생의 약 1/3 정도였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청각적으로 정 보를 처리하고 구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주일에 신문이나 책을 읽은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가 특수학교 학생은 62.5%,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88%로 독서로 정보를 얻는 학생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 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은 K 특수학교 학생들 중 초등 5학년부터 전공과까지 저학년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정에 서 보호자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1일 TV시청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가 특수학교 학생 85%, 고등학교 특수학 급 학생 64%로 TV 시청 시간이 대체로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1일 TV시청이 2~3시간 인 경우 특수학교 학생 중 9%,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중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TV 를 시청하지 않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영상을 보호자나 학생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는 편리함 때문 인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TV 시청 시간이 좀 더 길었다.

다섯째, 스마트폰 및 컴퓨터 1일 사용 시간은 특수학교 학생이 1시간 이하가 60%, 2 시간 이상이 41%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1시간 이하가 41%, 2시간 이상이 59%로 조 사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도 상 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조사된 1일 TV 시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스마트 폰, 컴퓨터, TV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접하는 시간이 많았다.

여섯째, 스마트폰의 소유 유무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학생 중 72%가 스마트폰이 없는 데 반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71%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 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같이 사용한다는 학생을 포함하여 주로 사용하는 기기가 스 마트폰이라고 한 비율은 특수학교 학생 78%,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71%로 특수학교



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95%)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 생 가정 모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컴퓨터가 스마트폰보다 접근성, 조작의 용이성 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일곱째, 앱 또는 사이트 선택권에 있어 특수학교 학생 본인 또는 어머니와 함께 선택 하는 경우는 60%,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는 88%로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기호를 따라 앱과 사이트를 선택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선택하는 경우 그 이유로 '좋은 콘텐츠를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녀의 필요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모두 노래 동영상 시청이 각각 66%,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지식습 득을 위한 정보를 얻는 목적보다 여가생활의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정보접근 실태조사와 컴퓨터 수업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직관적이고 친숙한 아이콘을 보급하고, 그래픽 심벌 등의 개발 및 보급,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지원 이 필요하다.

둘째, 쉬운 어휘를 사용한 정보를 음성화 하고, 다양한 발음명료도를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지원해야한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문식성 교육을 위해 재미를 느끼며 문자를 습득할 수 있는 쉬운 어휘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 도서, 전자책, 동영상 문헌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개발하거나, 또는 교육용 스마트폰을 보 급하고, 학생 또는 자녀의 요구나 필요를 고려하여 화면을 단순화시켜 교사 또는 부모 가 아이콘 또는 사진을 미리 셋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의 특성(예, 노래동영상)을 분석하여 여가생 활에 관련된 지식을 담은 동영상물에서 정보적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의 제작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채널 또 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여섯째,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스크린을 장기간 접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인터 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TV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대한 홍보, 가정과 학교의 연계지도, 활동중심 여가활동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일곱째, 개발된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와 앱을 학교와 가정에서 공유하며, 학부모 연수나 필요시 지원인력의 방문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 컴퓨터실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원과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실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 및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특수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 루어지기를 바라며, 장애학생들이 보다 쉽게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 공 측면에서 산학협력, 유과 기관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자료

- · 김유향 (2007). 헌법강의안. 서울: 네오시스.
- · 신미영, 유자영, 노석진, 하지연, 복혜정, 이명은, 김미정 (2015), 그래픽 심볼 적용을 통한 지적장애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 능력 향상 모색- 좋은 수업동아리 보고서. 서 울정진학교.
- ㆍ신미영, 홍여형, 윤은화, 김래용, 주경윤, 정혜림, 오대석 (2016). 그래픽 심볼 적용을 통한 지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모색- 좋은 수업동아리 보고서. 서울정 진학교.
- · 신미영 (2012). 정신지체 학생의 문식성 교육 실태 연구- 서울시교육청 학습연구 년제 연구보고서, 서울교육대학교,



# 〈표3〉 장애학생의 정보접근에 대한 컴퓨터 수업 담당 교사 3인의 인터뷰 내용

	A교사(경투	력 7년차)	B교사(경력 1년차)	C교사(경력 1년차)
대상학년	수등학교 5를	'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간	한 사	현	주 1호	주1호
학습목표 -	주니어 네이버에 스스로 들어가 원하는 노래나 동영상 클릭하기	어가 원하는 노래나 동영상 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검색하여 스스로 찾아가기	메일, 블로그, 동영상 검색하여 이용하기
	6학년	5학년	<del>3</del> 2	口3
하 어때 이 이	-문자 읽기 3명 가능함 -검색 창에서 알려준 패턴 입력 2명 가능함 -키보드 접근이 어려움	4명은 마우스키보드 조 작 연습 중임 -흥미는 없음	-학생 모두 인터넷 아이콘을 열고 들어감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에 작극적임 -7명 중 1명은 문장으로 입력, 2명은키워드로 입력함	-학생 절반이키워드 검색이 가능함 -대부분의 학생이 마우스 조작이 가능함
후 전 명 당	-상 수준: 아이콘 클릭해서 자기가좋아하는 것 찾아 듣기 -하 수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달라고 교사에게 요구하기 -한 사이트를 반복하여 익하기(네이버는 교사가 설정함) -컴퓨터 마우스 조작, 아이콘 위치와 모양 확인 후 더블 클릭하기 -재인용 스마트폰에서 엄지와 검지로 영상 커지는 방법 악히기	기가좋이하는 것 찾아 듣기  달라고 교사에게 요구하기  기(레이버는 교사가 설정함)  위치와 모양 확인 후 더블 라 검지로 영상 커지는 방법	-상 수준: 네이버, ZUM에서 유튜브 아이콘 클릭하여 동영상 찾기 -하 수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것을 입력하기	-상 수준: 마우스 조작 가능, 검색하여 실행하기 -중 수준: 마우스 조작 가능, 보고 싶은 것을 교사에게 요구하기 -하 수준: 마우스 조작이 어려움, 교사가 마우스 커서를 해당 모니터 위에 갖다 대고 학생이 클릭하게 하기 -네이버에서 메일 사용하기, 관심 키워드를 입력하여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기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아보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이트 개설	-날씨, 지하철,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 지도(내가 가고 싶은 곳 찾기) -재미있게 놀 여가거리는 유튜브	플리케이션, 지도(내가 가고 튜브	-유튜브, 지니키즈, 깨비키즈에서 노래 나오는 게임, 놀이 (예: 쓰레기 분리수거, 볼링게임)	-네이버, 유튜브, 주니어 네이버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기타 의견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발음명료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으나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판으로 검색하는 능력이 키워지길 비람 (예: 뽀로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덧셈 뺄셈 관련된 똑같은 것 찾아보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음	고 생각함. 생들이 많으나 음성인식 도 좋을 것 같음 로 검색하는 능력이 키워지길 있어 덧셈, 뺄셈 관련된 똑같은 을 개발하고 싶음	(컴퓨터실) -컴퓨터 모니터마다 때 있는 아이콘이 다름. 학생들이 익숙한 자리에서 하는 편인데 자리가 바뀌면 찾는 아 이콘이 없거나 위치가 달라져 있어 교시가 셋팅을 해 야 함 -아이콘이 많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구조화된 화면이 필요함 -컴퓨터실을 시용하고 모든 컴퓨터를 리셋하고 퇴장 하면 좋겠음	-검색사이트 화면에 메뉴가 너무 많아 선별이 어려움. 1면에 3~4개 선택지를 제시하면 좋겠음 검색어 입력 시 말(구어)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교실 수업에 음성인식 기능 활용이 어려움, 관련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함 -학생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의견: 정보를 검색하나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 같지 않음. 이미지를 보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음. 이미지를 보고 그



## I 장애인 정보 접근권-한국 I

# 장애인 '정보복지'에 대한 유감

정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들어가며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이 삶의 주요 워천이라고 말한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식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관대 함을 보여주었다. '아는 것이 힘'이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와 지식이고, 그 축적이 그 사람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데이터니 AI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인간의 삶 전체 영 역이 정보와 지식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손쉬운 복사와 편집 그리고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통신 기술은 인간의 지식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생산되는 정 보와 지식의 양은 더 이상 카운트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이 전에는 일부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었던 정보와 지식이 이제는 인류 보편적 자원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장애인에게도 역시 삶의 요건이며 동일하게 중 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시대의 엄청나게 늘어난 정보와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통신 기술로 인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컴퓨터 메모리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접근 기술

더 큰 문제는 이런 고도의 기술과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 유형별로 정보 접근 방법과 그해결 방법이 매우 다양해서 일관된 방법론이나 하나의 표준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각장애는 소리와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는 데이터(소리 변환) 자료나 점자 형태의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제작은 전체 출판물의 약 5%를 넘지 않는다. 심지어 오디오북으로 출판되는 전자책 (e-Book)은 1% 정도만 장애인 접근성 요건을 반영하여 재제작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청각장애는 눈으로 보는 방식에 의존한다. 즉 수어영상자료와 영상의 자막처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 텍스트 자료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이기는 하지만, 일반 텍스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문자 독해력 및 독서능력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대체자료의 제작과 보급보다는 독서역량 진단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도서관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는 장애의 정도와 문장 이해력에 따라생애주기 기반의 콘텐츠 내용과 전달 형식을 연구하고, 독서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장애유형별로 정보에 대한 수요 분야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정보 접근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취약점을 토대로 콘텐츠 발굴, 대체자료 제작 확대, 「저작권법」과의 상호충돌 문제 해결 방안, 보조기기 적용 및 보급 계획,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과 표준화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2조 원을 훨씬 넘고, 장애인 체육복지 예산도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예산은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예산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연간 약 55억 원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보 복지 예산은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복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도 매우 빈약하다. 현재 40여개가 넘는 장애인 관련 법 중에서 정보 접근성 측면이 언급된 법률은 「장애인복 지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도서관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른 두 개의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적용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도 서관법, 제45조에서는 정보와 지식 격차 해소 차원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기 기문제나 대체자료 제작의 문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유형 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과 방법론 및 정보통신, 보건복지, 문화, 교육 등 관련 부 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서관법」에 의거한 국립 중앙도서관의 하부 기능으로서 단순히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대체자료 제작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 장애인의 문헌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해결방안

최근 시중에 출판되어 나오는 대부분의 전자책(e-Book)은 보이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약간의 장애인 접근성 요건을 출판 전 콘텐츠의 제작과정에서 반영해 주면 시각 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그 약간의 접근성 반영이 이루어지 않고 있어 서 현재는 기 발행된 전자책의 원문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 받아 해당 파일에 장애인 접근 요건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친 후 장애인도서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 왔다. 문제는 재작업비용이 크고 파일 제공이 어려워 대체자료 전환 비율이 전체 출 판되는 전자책의 1%도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일단 생산, 즉 출판이 완 료된 이후에 장애인 접근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은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 다 보니 대량의 자료를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자책을 출판할 때 출판 과정에서 적정 요건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다. 사후에 변환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제작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자책 출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추가되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발간하는 전자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 애인 접근성 기준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맺음말

장애인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소비자 혹은 수요자 욕 구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 고 수요자의 욕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도출된다. 수요자의 욕구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칫 옳은 듯 보이나 대응이 시급한 수요자의 단기적 욕구에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늘 뒤로 밀 리고 결국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낙후된 상황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 재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인의 기초생활 수급과 연금이 차지한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은 장애인에게도 삶의 기본요건이며 사회적 자립과 독립을 위한 필수요 건이다. 장애인의 정보 복지가 선택적 영역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 한 실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춰지고 필요한 자원이 배정되 기를 희망한다.



# l 장애인 정보 접근권-한국 l

#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그리고 알 권리

백정연 (소소한 소통 대표)

# 들어가며

우리는 일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마주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SNS를 하며, 식당 에서 다양한 메뉴 중 원하는 음식을 고르는 등 의식하지 못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정보는 모 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을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묶어서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 칭한다. 발달장애 인은 인지적 능력의 손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고,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문자 독해력 발달에서 차이를 보인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 게 계단이나 턱이 장벽이 되는 것처럼, 인지적 어려움이라는 장애 특성을 가진 발달 장애인에게 일상의 수많은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이 부 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운동은 사회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 공감을 얻고,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 (Universal Design)으로 까지 발전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1

<sup>1</sup> 배리어프리디자인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Barrier)를 없애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Universal)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리어프리디자



# 정보접근에 있어서 장애유형간 차별 현상

그렇다면,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와 관련한 법은 어떠할까? 장애 관련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장애대상별 정보접근 지원에 대한 장애 관련 법상 차별 현상

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접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점자도서, 음성도서	수화통역	없음
「장애인차별 금지법」	점자, 점자교정, 대필, 점자 · 음성 변환용 코드사 삽입된 자료, 큰문자	수화통역, 낭독, 문자,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없음
「발달장애인법」	-	-	이해하기 쉬운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2015)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제해 놓은 유일한 이 법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도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 연구소 등 민간 영역에서 쉬운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생활 안내책(2014)',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2013)'등을 제작하며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쉬운 정보 제작을 시도해왔다.

인은 장애인 등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 주지만 장애인을 사회의 일반적 구성원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부각하고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3).



#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쉬운 정보란 한자어, 전문용어, 외래어 등 어려운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는 글과 글의 설명을 보조적으로 돕는 이미지(삽화, 사진 등)로 구성된 정보를 말한다. 국내에서 아 직 생소한 개념인 쉬운 정보는 이미 해외에서는 'easy read'로 불리며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 의사소통 권리현장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 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미국 등은 쉬운 정보 제작과 관련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서비스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쉬운 정보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유럽 도서관에서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서 장애인(난독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 애, 학습장애, 실어증, 치매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에 대해 국내의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2017년 4월, 소소한 소통을 설립하였다. 소소한 소통은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 적기업으로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보는 정보를 쉽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발달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부터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쉽게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년 전인 설립 초기에는 쉬운 정보가 무엇인지 장애와 관련된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이 생소해하였다.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가 꼭 필요한 지원이자 권리임을 쉽게 설 명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글을 읽고,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수 어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정보가 그렇다며 가는 곳마다 목소리를 내고 다녔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인지 지금은 쉬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실제 쉬운 정보를 제작하는 공공기관, 복지기관, 교 육기관 등이 크게 늘어났다.



시각장애인 : 점자



청각장애인 : 보청기



발달장애인: 쉬운 정보

[그림 1] 쉬운 정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소한 소통의 그림



# 쉬운 정보 확산을 위한 움직임

쉬운 정보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를 들 수 있다. 이센터는 2018년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립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안내서를 만들었고, 실제 그 안내서에 따라 서울시의 장애 관련 정책, 일상정보 등을 쉽게 제작하고 있다. 또한 쉬운 정보의 확산을 위해 장애인복지 현장 실무자, 공무원 대상으로 쉬운 정보 제작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쉬운 정보 제작과 관련하여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첫 사례인 만큼 잘 자리매김한다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내 장애인방송 정책에서도 변화가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작년에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방송 접근권 제고 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실제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 현재 발달장애인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영상이 EBS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관점에 치중되었다면, 발달장애인이 시청자로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점이라 생각되어진다.

소소한 소통도 쉬운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취업준비, 직장생활적 응과 관련한 쉬운 책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를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작·무료 배포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마치며

국내에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지원법은 「발달장애인법」이 유일하다. 모든 장애인이 그러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에게



절대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며, 중증의 발달장애인일 경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 우므로 쉬운 정보가 아닌 보완대체의사소통이나 인적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발 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정보는 더 많이 알려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장애인 뿐 아니라, 어르신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편한 것으로 인식이 확산된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가 더 많이 제작되어, 발 달장애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어르신, 경계선 지능 청소년 등 모두 에게 쉬운 정보로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정보로 인해 사회참 여에 제약을 받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정배 (2015).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한국장 애인개발워.
- · 고영준 (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 김용득 (2018). 발달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 · 손지영 (2018).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별첨〉소소한 소통이 제작한 쉬운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안내자료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안내자료



대구피플퍼스트 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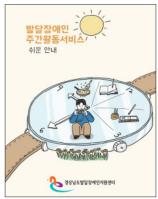
공공후견사업 소개자료



부평구 장애인복지 정보안내



알다센터 건강 정보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자료



장례식장 예절 안내



모두를 위한 여행 안내책



## I 장애인 정보 접근권-한국 I

# 장애인 정보접근, 우리는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다

김병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

#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작금의 현실, 첨단 ICT 기술의 발전은 일상의 많은 부 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 며 기억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는 갔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 가운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선별해 유의미하게 정보를 해석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도래했다. 꿈의 기술이라 일컬어지던 5G 정보망이 민간에 보급되었으며,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하던 빅데이터나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이다. 바야흐로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무한 공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갖은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흥미나 이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 유만으로 첨단 기술의 보급과 정보 사회의 일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뒤쳐지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IT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격이나 지침보다, 디자인이나 개발 편의성이 우선시 되어 결국 장애인 은 비주류라는 딱지를 달고 누군가의 편의 뒤로 밀려나기 일쑤인 현실은 우리를 둘러 싼 눈부신 사회가 드리우는 분명한 그림자이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장애인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당연히 현대인의 일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불리한 대우나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에서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이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거대한 기업이나 단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장애인이 겪는 일은 타인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월패드, 키오스크, 웹 환경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부재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 접근에 있어 약자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접근성부재의 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 내 집인데도 못 들어가는 '꽉 막힌' 문. 월패드(Wall-Pad)

최근 주거 환경에 있어 편의성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컨셉으로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기술로 도어락이나 실내 벽면에 설치해 해당 공간과 관련된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단말에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월패드 등 전자보안설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서 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현관에 설치된 비밀번호 입력 단말은 물리적으로 눌러서 작동하는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스크린 방식이다. 비장애인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지만 화면상에 표시된 내용이나 자판키의 배열, 위치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 단말은 그저 평평하고 매끄러운 판에 불과할 뿐이다. 보안과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명히앞서 있다고 여겨지던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 단말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집조차 편안히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장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공동 현관이 이러하니 당연히 같은 문제가 개별 가구 현관의 도어락이나 각 가구



내에 설치된 보안, 편의설비 제어용 월패드 앞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매번 이런 상 황에 처하는 것이 불편한 나머지 이웃이나 관리직원에게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달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결국 보안을 위해 설치한 첨단 보안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많은 사람을 위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하지는 못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결국 장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드나들고 마음 편히 쉴 보금자리마저 고립과 차별을 실감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바꿔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일상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 키오스크(Kiosk)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부터 공항이나 철도역의 발권창구, 영화관이나 은행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일상 곳곳에서 비대면 무인 주문 시스템, 이른바 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키오스크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에서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 양 자 모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 애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앞서 다루었던 월패드와 같은 이유로 화면 낭독, 음성 안 내와 같은 시각 대체 인터페이스 등 적절한 접근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 단말은 그 자체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키오스크 가 도입된 매장과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 매장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 직원이 직접 응 대하는 경우 메뉴나 취급 상품의 종류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만 받을 수 있다면 시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 고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 문하는 등 독립적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가 도입된 매 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취급 상품의 파악에서부터 선택과 주문,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의 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고객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직접 응대 방 식에 비해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응대 쪽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나 다른 고객이 없는 상황이라면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음료 한 잔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장애와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덜하기는 하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이러한 불편이



외래어나 터치식 전자제품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과, 높은 위치에 설치된 키오스크 화면을 조작하기 어려운 일부 지체장애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접근성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 도입된 첨단기술 탓에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참담한 경험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해야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섰지만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는 키오스크 탓에 당황스럽고 착잡한 기분으로 직원을 부르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각장애 부모들의 씁쓸한 경험담,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정작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관계 기업이나 담당자들은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 남의 손이 없다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 금융 · 개인정보 서비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할 때,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 분명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며 거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비좁은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야 하고 입력 단말의 키패드를 더듬으며 몇 번이나 오타를 낸 뒤에 결국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해 줄 것을 부탁해야하는 게 시각장애인의 현실이다.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매번 배열이 바뀌는데다 화면낭독도 지원하지 않는 보안 키패드 탓에 사용을 포기해버리거나 개인 금융정보 노출을 감수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최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간편 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각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참여의 과정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재산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정보의 바다. 길 없는 사막, 웹 환경

최근 웹 사이트의 트랜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성과 편의성이라 할 수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이나 영상이 텍스트를 대신하고 버튼이나 배너 역시 텍스트보다는 일러스트 등의 디자인 요소로 채워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 이 시각장애인을 웹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온라인 미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인터 넷진흥원의 2019년 1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메인 수는 160만 개가 넘는 다. 그러나 웹 사이트를 제작에 있어 다양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및 시각장애인 등 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국제적 규격인 웹 표준을 준수하는 웹 사이 트의 비율은 국제 표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웹 사이트의 기본적 요건인 개방성과 접근 편의성은 간과하고 만 것이다. 웹 화경에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버튼이나 이미지 등 구성 요소에 부여 된 명칭과 같은 텍스트를 낭독한다. 바꿔 말하면 웹 표준을 지키지 않고 버튼이나 배 너 등을 순수한 이미지로 처리하거나 이미지, 영상 등에 이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 를 삽입하지 않은 웹 사이트에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시각장애인은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유명 포털사이트, 언론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홈 페이지, 온라인 홈쇼핑, 각종 온라인 티켓발권 서비스 등 웹 사이트의 종류나 규모, 용 도와 관계없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현대의 웹 환경이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정표도 길도 없는 막막한 사막이 되어 버린 것이다.

# 여전히 먼 손 안의 가능성,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유통되고 있다. 전화나 메시지, 카메라나 일정관리와 같이 기본 적으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배달음식 주문에서부터 각종 미디어 콘텐츠 감상과 SNS, 금융거래와 사물인터넷 제어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 의 하드웨어가 수많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스마트폰을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일상의 중심의 자리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웹 표준 미준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고려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개념의 도입은 수익성이나 비장애인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스마트폰 제조사는 물론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까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을 경감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대부분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나 저시력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인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보물찾기를 하듯이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헤매거나 스마트폰을이름 그대로 통신기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

이러한 접근성 부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일까. 기업이나 기관 등에 대해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를 요구하거나 강제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 9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유명 홈쇼핑 사이트인 'G마켓', '롯데마트', '이마트'를 상대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적 접근의 범위 역시 웹 환경뿐아니라 모바일 앱(APP)과 터치 입력 방식을 채용한 키오스크 및 각종 전자제품 등에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불편에 맞선 장애인 사용자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개발 과정에서 접 근성 확보를 위해 투자된 노력이나 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볼멘소리뿐이다. 배리어 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국제적 표준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이나 사용 편의성 확보라 는 과제를 더 이상 기업의 자발적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보장에 있어 법률적 근간이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해당 법률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가 단순히 물리적 현실 공간에서뿐 아니라 웹 등



정보통신 환경과 의사소통 과정 등 장애인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금 지되어야 함을 표방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인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평등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허 점이 존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보 접 근성 보장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관련 법에서도 웹 사이트 이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웹 사이트를 제외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의 공공 시스템, 각종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발효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웹 사이트 이외 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법률적 보장 부재 문제일 것이다. 더구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법률적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 '정당한 사유'는 그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 성과 사용 편의성 보장 의무를 가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강력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의 근절과 평등한 사회 참여 보장이라는 근본적 목적의 실현을 위 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률적 공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행령은 여전히 장애인을 또 다른 차별로 내몰고 있는 듯하다.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보장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실을 고민하는 전문가로서, 또한 문제의 중심에 선 당사자로서 글을 마무 리하기에 앞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련 법령의 재정비이다. 법률이 본래의 효력과 기 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뿐 아니라 부속된 시행령 또한 시대 적 상황에 따른 현실성과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시행령이란 법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중계점인 셈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 법률의 시행령은 어떨까.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첨단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데 반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시행령들은 여전히 10년 전 모습 그대로이 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시계 는 2008년에 멈춰 서버린 것이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법령은 기업 이나 기관의 사적 가치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웹과 같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엽적 대책이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각종 전자제품, 키오스크 등의 기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근본적 기준과 규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령은 끊임없이 재고되고 변화하며 사람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앞에 서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논의되어야 할 것는 실제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진, 이를 유통하는 유통구조와 경영진의 의식적 개선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많은 분야에 있어 여전히 '소수'이자 타인의 도움이나 사회적 보호에 의존하는 '존속적소비자'이며 비장애 소비자에 비해 낮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비주류 집단'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차피 만들어도 별로 쓰지도 않고 돈도 안 되니까'라는 이유로 지금도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 단말에는 여전히 화면낭독 기능이 빠져 있고 키오스크주문 패널은 묵묵부답이며 장애를 가진 이들은 가뭄에 콩 나듯 출시되는 버튼식 전자제품이나 음성 안내 제품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치명적 오류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장애인구는 약 267만 명, 국민 20 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장애를 가진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동료 등 가까운 이들, 즉 장애 관계자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한다.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문제를 논함에 있어 이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윤리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수익이라는 경제 원리에 따라 실리를 따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생각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등 지금까지는 약자라는 분류로 한데 묶여 등한시 되어왔던 이들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포용하는 범용적 전략, 즉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는 지금까지 놓쳐 왔던 잠재적 고객을 실제적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고 동시에 최대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공공 이미지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사용자이자 소비자로서 인지하고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반영하는 것은 시대에 발맞추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현명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점은 사회 전반의 관심과 변화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자립의 실현은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 사회에 있 어 장애란 더 이상 나와는 무관한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지인, 동료나 이웃 의 일상이다. 장애인을 돕는 사회는 분명 선하고 따듯한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장애인이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사회일 것 이다. 화면이 꺼진 노트북 컴퓨터에 이어폰을 연결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이상 주변의 관심이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사회,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고 있는지 주 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작 그 앞에 선 시각장애인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저 어디에나 있 는 평범한 누군가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 전체가 환 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공공 보안 서비스가 크게 강화되었던 것처럼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 로소 답이 보이지 않던 감감한 문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사회의 급류 속에서 방 향을 잃고 표류하지 않기 위한 방법, 편의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 끝에 오는 새 사람의 온기보다 0과 1의 디지털 신호가 익숙해져 버린 어리석은 결말을 피하기 위한 방향타, 그것은 '많은 사람' 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 전제이며 접근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통의 목 표 의식일 것이다.



I 장애인 정보 접근권-뉴질랜드, 미국 I

#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려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들어가는 글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사회이다. 정보란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자료(데이터)를 말한다. 즉, 자연이나 사회 혹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을 모아둔 자료를 어떤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정보이다. 이들 정보는 최적의 목적에 따라 글, 그림, 부호, 빛, 소리, 신호, 언어,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정리되게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이 풍요 속에 빈곤에 처하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집단 중 대표적인 정보 빈곤 집단이 장애인 집단이며, 그 중에서도 인지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집단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자신에게 습득되는 정보의 절대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애집단을 특정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의 제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관심, 흥미 등)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야 하고, 그들의 특성(인지적 수준)에 적합한 생애주



기별(지속성) 평생교육 및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주류인 고학력의 비장애 성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비주류중의 비주류인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진 입부터 장벽에 놓여 있다. 이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이들 앞에 놓 여있는 기존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거나 이들 장벽 앞에 제반 도움의 발판을 놓아 그 장벽을 넘도록 하는 시도(Scaffolding from Barrier)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부터 만들어지는 제도에는 장벽이 없도록 하는 정보접근 기회(Barrier Free or Barrier Free Through Universal Design)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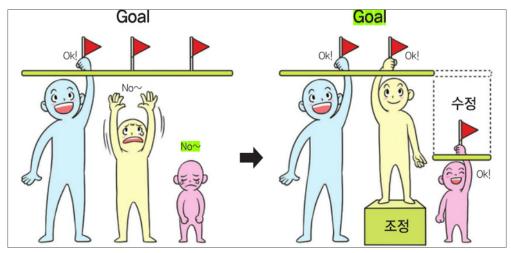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

# 1. 정보의 조정과 수정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결정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 제10조(의사소통지원)의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워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 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종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정보의 조정과 수정(Accommodation & Modification of Information)이라고 한다. 조정은 비장애인들이 접 하는 정보를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능력 있는 또래 들이 약간의 발판(scaffolding)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 수정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의 수준 자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림 1] 정보의 조정과 수정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가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플퍼스트뉴질랜드(People First New Zealand: PFNZ)이다. PFNZ는 "우리가 없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장애 운동의 기본 가치가 발달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음을 피플퍼스트 활동을 통해 강조하면서 장애 당사자가 직접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자기 옹호(Self Advocacy)운동이 일자, 정부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당한 가치를 지급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옹호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이 각종 정보를 발달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바꾸어 주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일명 '쉽게 만들기(Make it Easy)'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 활동이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뉴질랜드 보건부와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작업이기에 가능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PFNZ에서 '번역'한 '읽기 쉬운 형태'의 문서가 정부의 공식 문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간차원의 '소소(발달장애인의 소소한 소통)'와 공공차원인 서울특별시의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하다]가 설립되어 PFNZ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시작하였다.



# 2. 정보문해 조정을 위한 체계적 노력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인식개선)와 이에 기반 한 정보조정이라는 산술적 병합(1+1)의 시도가 아니라 거듭제 곱(22)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있는 것을 가져다가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Approach)의 시도가 필요하다.

올해로 방영 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유명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에 자폐 아동 '줄리아'가 2016년부터 고정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지난 1969년 미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프로그 램으로, 현재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방영되고 있는 1970년대에 이 프로그램에서 는 린다라는 캐릭터를 통해 처음으로 수화를 가르쳤다. 1975년에는 다운 증후군을 가 진 제이슨이 등장한다. 제이슨은 그 이후에도 무려 50번이 넘는 에피소드에 등장하였 다. 1982년도에는 시각 장애를 가진 아리스톨이라는 캐릭터가 소개되었다. 1988년도 에는 휠체어를 탄 캐릭터로 케이티가 소개되었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실제 휠체 어를 탄 타라라는 꼬마가 쇼에 등장하여 엘모와 그 밖의 친구들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세서미 스트리트 책 '위 아 어메이징(We're Amazing)'으로 먼저 소개된 줄리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줄리아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그 이전부터 '세서미 자폐증 재단'을 설립하고 수년간 자폐성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교육용 앱으로 개발하였으 며, 자폐증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에 참여해왔다. 따라서 줄리아는 세서미 스트리트의 오 랜 노력과 연구 끝에 소개된 캐릭터인 셈이다.

# 3. 정보문해 조정(Make it easy)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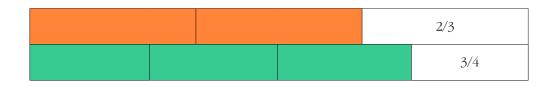
1) 높은 문해력 수준의 교과교육 내용을 낮은 문해력 수준으로 설명한다.

발달장애학생들은 어휘력 수준이 낮아 교과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6시간 동안은 지적장애와 같 다고 하여 붙여진 "6시간 지적장애(6 hours intellectual disabilities)"라는 말이 있다. 높은



문해의 벽을 낮추려면 실물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조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분모가 다른 분수셈(2/3와 3/4의 대소 비교)의 경우 통분 즉, 분모를 통일시키는 동치분수(同値分數)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두 분수의 분모(3과 4)에 대한 최소공배수(12)의 개념을 가져와야하는 등 발달장애학생들에게는 도저히이해 불가능한 개념이 등장하므로 교사는 이들에게 분수계산을 가르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피자의 그림판이나 동일한 길이의 종이 띠를 가지고 하나는 3 등분을, 다른 하나는 4등분을 한 후 각각의 2/3와 3/4을 비교한 후 큰 쪽 즉 3/4이 2/3보다 큼을 보여주게 되면, 발달장애인들도 분수 셈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일반방송의 관용적, 우회적 표현과 내용전환의 맥락을 명시적으로 해설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어휘력과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아 관용적 표현, 내용전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송내용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용적·우회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알기 쉬운 자막'을 제공할수 있다. 내용을 전환할 때는 사전에 단서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용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프로그램 내용을 명쾌하게 제시한다면, 발달장애인들도 프로그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적·우회적 표현에 대한 '알기 쉬운 자막' 및 내용 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음 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알기 쉬운 자막' 제공: 관용적 · 우회적 표현이 나올 때, 알기 쉽게 자막으로 설명 해 준다.



# 〈MBC 무한도전, 2014년 11월 22일 분, 405회 쩐의 전쟁2〉

# 기존 방송 Tip 적용 후 방송화면 는 뜨고 코 베이다: 알고도 당한다.

2) 내용 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 제시: 다수의 정보를 제공 할 때는 사전에 전체적인 맥락을제공함으로써 내용 전환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한다.

(MBC 이브닝 뉴스, 2014년 11월 14일 매혹적인 백설공주, '노우 화이트' 外〉

기존 방송	Tip 적용 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수의 공연과 전시회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시됨.	① 전체적인 맥락 제공  *공연: 스토우 화이트 서커스 카발리아 *전시회: 반고흐 전		
	② 순차적으로 정보 제시		

# 〈개그콘서트〉

기존 방송	Tip 적용 후		
별도의 정보 제공 없이,	방송화면		
에피소드가 바뀜.	자막: 다음은 '사둥이는 아빠딸'입니다.		



# 나오는 말

모든 정보를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수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수의 사회에서 다수에게 익숙했던 삶에서 제반 활동에서 소수자도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을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정보의 조정과 수정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공감력을 키우며 이들과 제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우의 수를 창출하여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노인, 다문화 집단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 한 정보의 조정과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보 문해를 위한 연구기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은 기대(low expectation)로 인하여 정보자체가 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낮은 기대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정보의 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지능이론 전문가인 H. Gardner 교수는 다중지능 중 9번째에 해당하는 존재지능(또는 영성지능)을 연구하면서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을 피험자로 선택하였다. 그과정에서 그가 반성적으로 깨달은 점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심오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관련하여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각종 애플리케이션, 방송 컨텐츠, 문헌정보, 교육컨텐츠, 웹 접근성, 나아가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곧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대한 각종 정보관련 리터러시(literacy)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조정과 수정연구가 지속되어져야할 것이다.



# I 장애인 정보 접근권-호주 I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호주의 사례'

김형식 (한반도대학교대학원 명예교수)

# 들어가며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협약 제21조가 의미하고 있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 약 제21조는 "국가에 부과된 긍정적 의무로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보를 탐 색하고 받을 수 있는 자유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협약 제21조는 구체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자유가 원활히 존중될 수 있는 수단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협약 제2조에서 언급하는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계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의 사소통"이란 문자언어 · 음성언어 · 단순 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 자표시, 자막,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 함하다.

협약 제21조는 협약 제29조의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와도 연계된다. 협약 제21조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 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한 부 분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생산된 모든 정보가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 미한다. 그런데 "공적"인 정보와 자료는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 실정이며, 여전히 사(私)적 경로를 통한 정보의 접근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 의 정부에서 시장화된 연구를 추구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강조



할 여지가 있다. 즉,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더라도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공적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적 정보 영역에 의존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적 영역의 정보전달 관련 종사자들도 장애인에 대한 반차별의식과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적영역의 정보전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등의식과 반 차별의식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 장치가 공적영역을 넘어서서 사적인 정보전달의 영역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활동을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단순히 법적 조치로서만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잠재적 사회 기여 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원칙에 비추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하여 호주의 사례를 들어비교해보고자 한다.

# 호주의 정보 접근권 사례

위에서 요약한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권리협약의 이행에 첨단을 자부하는 호주의 현황을 나타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시각장애인 존(John)씨는 정부가 배포하는 여러 형태의 자료에 접근함에 있어서 대부분 접근이 어려웠다. 세 번이나 서부 호부 정부에 '종합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요구했으나, 이 요청에 대해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 〈사례 2〉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가 수화나 문자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TV를 통한 정부의다양한 발표문, 광고, 정보가 자막화 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

### 〈사례 3〉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발표문과 안내문과 같은 정보가 쉬운 언어(Easy English)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된다. 간행물들도 쉬운 언어로 표현 되어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수준의 표현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컨텐츠 속에는 특수용어나 전문용어가 많으며. 웹사이트(Websites)도 복잡해서 탐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언어와 관련된 사례는 많은 편이다. 간혹 정보 제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단체와 자문형태의 협의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형태의 지원( 주차 지원, 활동 보조인 지원, 수화 통역 제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발 달장애인에게 자문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쉬운 용어로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황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의 측면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된 문제가 대 부분이다. 대부분의 장애인과, 장애아동들은 의사표현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장벽에 부딪힌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협약 국가 이행전략(National Action Strategy)'을 통 해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통신과 정보매체'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전략만 세웠을 뿐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있어서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 호주 정부의 국가이행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장애인당사자의 의견 배제

호주 정부는 '국가이행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이행전략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이들을 국가이행전략 수립과정에 참여 시키는 정도가 아주 피상적이고, 임시방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단체 와 국가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틀이 없는 상황이 다. 협약의 원칙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이나 정보제공의 과 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사기업이나 대중매체를 독려해서 이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기업의 참여와 기여 부분은 협약 제8조 '장애인식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조항과 호주정부의 노력

이렇게 본다면, 협약 제21조는 범분야적(cross-cutting)이며, 상호교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협약 제5조의 장애인차별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누리는 정보를 동등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차별행위이기 때문이다. 협약의 제9조의 접근권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흔한 컴퓨터를 통한 여러 형태의 장애를 고려한 인터넷 접속도 마찬가지이다. 협약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및 공공생활 참여도 정보권(협약 제21조)과 접근권(협약 제9조)이 평등권(협약 제5조)에 따라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협약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와 체육운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협약 제30조에 국한하여 예를 들면, 일반논평(No.2)에서 명시한대로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당사국은 아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②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TV 프로그램, 영화, 극장, 기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③ 가능한 한 극장, 박물관, 영화, 도서관, 관광, 유적지 등과 같은 문화 공연과 서비스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문화 유적지 등의 방문에 있어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사국은 이러한 관광명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 수반되는 하나의 의무사항이다. 협약의 모든 조항은 이처럼 상호 교차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예로, 호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 이하에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호주 정부는 '대중매체 접근성(Media Access)'를 통해 자막이 제공되는 교육자료와 DVD 등 장애인이 필요한 자료를 적재적소에서 인터 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상호 교차적으로 자막자료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국가보고서에서도 인정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적절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호주 정부는 협약 제21조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 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는 호주의 협약 이행 중 제21조의 의사표현과 정보 접근권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권리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접근가능한* 매체를 통해 모든(All) 정보를 재고함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청각장애 통역, 점자, 쉬운언어, 자막등과 이울러 호주 수화(Auslan)를 법적으로 또는 정 책적으로 공식 호주 수화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나 자료의 제공은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혹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상호 자문을 하기도 하 지만, 일부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는 이것이 아주 제한된 기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당사자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정부가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호주의 협약이행국가 전략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2012년 말까지 세계 웹사이트 (websites) 협의회가 채택한 웹 컨텐츠 접근성 안내(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을 최소한 2.0 수준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소통매체를 제공하지 않음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권리위원회의 견해와 아울러 장애인단체는 호주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호주 정부는 언어 선택과 자문 과정, 그리고 공공 행사를 포함한 모든 정보공급에 필요한 접근성 표준화를 개발 할 것
- 호주 정부는 자막, 브레일, 쉬운 용어, 청각자료의 기술 등을 통하여 모든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 호주의 수화 오슬란(Auslan)이 호주 공식수화로 채택되도록 할 것이며, 청각 장 애인의 오슬란 접근권이 법적 보장을 받도록 할 것

호주의 정보 접근권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협약의 이행은 정부에게만 맡겨 둘 사안이 아니며,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욕구파악과 협약 이행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다른 한편으로 협약 제21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정부 당국의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통해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반면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작방법, 준수사항 등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2017년 12월 26일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제작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 및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 방송제작자에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 및 방송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향후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등한 방송프로그램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2017년 2회, 2018년 6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연중)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

최소한 한국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상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도나 정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가의 여부다. 이것은 정부에만 맡겨두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와 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집요하게 감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

<sup>1</sup> 한국 정부의 2019년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9.3.8.)



### I 장애인 정보 접근권-EU I

# EU,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의무화

송재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격차해소팀)

# 공공부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의무화 추진경과

2010년 5월 19일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에서는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라 는 제목의 통신문을 통해 공공부분의 온라인 콘텐츠 시장 촉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0년 11월 15일 유럽위원회에서는 UN 장애인권협약에 기반한 '유럽 장애인 전 략 2010-2020: 장벽 없는 유럽에 대한 새로운 의지(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를 발표했다. 2016 년 2월 12일 EU 규범을 통해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DI-RECTIVE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of public sector bodies)'을 유럽연합(EU)에서 공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했다.

#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 주요내용

'공공부분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DIRECTIVE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of public sector bodie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다.



### ○ 제1조(준수대상 및 범위)

제1조에서는 준수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EU회원국의 공공부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서비스 방송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민단체(NGO), 실시간 기반 미디어, 온라인지도 서비스, 공공이 관리하지 않는 제3자 콘텐츠 등은 적용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제1조에서는 EU 회원국간 최소한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제2조(EU 회원국 간 최소한의 준수)

제2조에 따르면 EU회원국은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넘어 정보 접 근성을 유지하거나 도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 제4조(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

제4조에서는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EU회원국은 공공부문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확인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제5조(불균형 부담)

제5조에서는 불균형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회원국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접근성 요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의 규모, 자원 및 성격 및 웹 및 모바일 앱 사용빈도 등 추정편익 등 고려해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제6조(접근성 요구 사항의 적합성 추정)

제6조에서는 접근성 요구 사항의 적합성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는 유럽 정보 접근성 표준(EN301 549)¹에서 보장하는 이상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up>1</sup> Accessibility requirements suitable for public procurement of ICT products and services in Europe



### ○ 제7조(추가 조치)

제7조에서는 추가 조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EU회원국은 공공부분 지침 준수 에 대해 제공되는 접근성 표준 명세서에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정보 접근성 현황을 제 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접근 표준 명세서 내용으로는 접근성 미준수 콘텐츠 설 명, 대안 제시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 제8조(모니터링 및 보고)

제8조에서는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U회원국은 2021년 12월 23일까지 및 그 이후 3년마다 정보 접근성 준수 측정 데이터를 포함한 모니터링결과 를 위워회에 보고<sup>2</sup> 해야 한다.

# 제9조(시행 절차)

제 9조에서는 시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회원국은 적 절하고 효과적 시행절차 보장하고 효과적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sup>3</sup> 옴부즈맨(시민 감 찰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 제10조(위임 행사)

제 10조에는 위임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위 임된 법률을 채택하는 즉시 유럽 의회와 위원회에 이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에서는 위원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1조(위원회 절차)

제11조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유럽 경제 및 사회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다.

<sup>2 2018</sup>년 9월 23일 까지 감시보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통보

<sup>3 2018</sup>년 9월 23일 까지 감시보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통보



# ○ 제12조(준수를 위한 개선)

제12조에서는 준수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EU회 원국은 2018년 9월 23일까지 본 지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4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검토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 제13조(검토)

제13조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2022년 6월 23일까지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검토 수행해야한다. 검토는 제8조에 규정된 모니터링 결과 및 제9조의 집행절차 시행 결과에 대한 회원국 보고서를 고려하여 수행해야한다.

### ○ 제14조(시행)

제14조에서는 유럽연합 5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째에 발효된다.

# EU 공공부문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준수지침에 따른 영국의 후속조치

영국은 2019년부터 모든 새로운 공공 부문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공 부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사용자,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성명은 영국의 공공 부문 웹사이트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해 EU의 공통지침을 구현하는 법으로 제정했다.

<sup>4</sup> 준수기한 : 웹 사이트(18.9.23일 전 공개 : '19.9.23~, 다른 모든 경우 : '20.9.23~) 모바일 앱('20.9.23.~)

<sup>5</sup>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표1〉 공공부분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기한

내용	준수기한
2018.9.22. 이후 공개된 공공부문 웹사이트	2019. 9. 22
모든 다른 공공부문 웹사이트	2020. 9. 22
공공부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21 6 22

접근성 충족을 위해 지켜야 2가지 요구사항으로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와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선언이 있다. 웹 접근성 표준 준수는 웹 접근성 국제표준(WCAG 2.1) AA등급 또는 유럽의 동등한 유럽 정보 접근성 표준(EN301 549)<sup>6</sup>\* 준수하도록하고 있다.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선언에서는 2019년 초에 배포될 준수 양식에 따라 준수내용을 작성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DIRECTIVE (EU) 2016/21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UR-Lex,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 L .2016.327.01.0001.01.ENG&toc=OJ:L:2016:327:TOC.
- "How we're helping public sector websites meet accessibility requirements", Government UK.
- https://gds.blog.gov.uk/2018/09/24/how-were-helping-public-sector-websites-meet-accessibility-requirements/.
- · "Presumed conformity", 영국법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8/852/part/3/made

<sup>6</sup> Accessibility requirements suitable for public procurement of ICT products and services in Europe

